

안녕하세요.

화물운송 실적신고 대행사 인트리브입니다.

아래 내용은 지자체에서 보내온 공문 샘플입니다.

2023년 12월 6일 ○○시에서 보내온 '**2022년도 제도준수 위반(신고결과 위반의심자 통보)**' 공문에 의하면,

2022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가 마감되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(FPIS) 상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실적미신고 의심내역, 직접운송 및 최소운송 위반 의심내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, **2023년 1월 15일(월)까지 의심내역 소명자료를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 내용처럼 지자체 교통행정 담당부서에서 제도준수 위반 운수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보통 2주~3주 기안을 주면서 소명서(의견제출서) 제출을 요청합니다.

저희 회원사뿐만 아니라 비회원사도 제도준수 위반, 소명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

# 수원시

수원을 새롭게  
시민을 빛나게

수신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자 귀하

(경유)

제목 2022년 화물운송 (실적신고, 직접운송, 최소운송) 신고결과 위반의심자 통보

1. 경기도 물류항만과-14932(2023. 12. 5.)호와 관련입니다.
2. 2022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가 마감되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(FPIS) 상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실적 미신고 의심내역, 직접운송 및 최소운송 위반 의심내역을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, **2023년 1월 15일(월)까지 의심내역 소명자료를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실적신고 확인방법 -

- ① [www.fpis.go.kr](http://www.fpis.go.kr) 접속 후 회원사 아이디로 로그인
- ② 상단의 메뉴에서 '통계정보' 클릭
- ③ 좌측 상단에 '제도준수 결과조회' 클릭
- ④ 분석연도(2022년)를 변경하여 검색 클릭
- ⑤ 준수여부 확인 후 준수는 정상, 미준수는 상세내역 보기 및 엑셀 다운로드드 확인

3. 아울러, 소명자료 미제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'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' 제19조 제1항 12의2, 제27조제1항8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제9조의2와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(붙임 : 행정처분 참조)

실적신고 문의 : ☎ 1899-2793 ([www.fpis.go.kr](http://www.fpis.go.kr))

-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(FPIS)상의 실적신고 금액조정시, 조정금액을 직접운송 및 최소운송 결과에도 변경 적용하여야 함(소명결과 자료 제출)

- 붙임 1. 2022년도 (실적신고, 직접운송, 최소신고) 의심내역 각 1부.  
2. 실적신고 제외 대상 및 행정처분 내용 1부. 끝.

수 원 시



주무관 유일선 \*출퇴근수업인 장 특별휴가 대중교통과신 전권 2023. 12. 6.  
 협조시 한상배

시행 대중교통과-94351 (2023. 12. 6.) 접수

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, 대중교통과(인계동, 수 / http://www.suwon.go.kr  
 원시청) (인계동)

전화번호 031-228-3295 팩스번호 031-228-3722 / wombltop@korea.kr / 비공개(7)

정렬한 수원, 부패는 멀리 정렬은 더 가까이

## 참고1 실적신고 제외 대상

### □ 관련 규정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6조의2

- 국제물류주선업자 실적신고 의무 제외('15.12.29 개정)
  - 국제물류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 또는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는 경우, 해당 국제물류주선 실적만 실적신고에서 제외하고 운송사업자로서 운송한 실적 또는 운송주선사업자로서 주선한 실적은 실적신고 대상임

### □ 관련 규정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7조의2제1항

-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

### □ 관련 규정 : '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' 제2조제5항

1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
2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
3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차량, 노면청소용 차량, 살수용 차량 또는 소방용 차량
4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사다리, 크레인, 고소작업대를 갖춘 차량
5. 「위·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」 상의 공 허가대수(T/E) 또는 「화물자동차 대·폐차 업무 처리 규정」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·폐차시 발생하는 양 허가대수(T/E)
6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운송사업자의 소속 해당 화물자동차
7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0조제1항에 따른 경영의 위탁이 아닌 운송사업자(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 소속 직영차량

### □ 관련 규정 : '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' 제2조제6항

1. 「항만법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만에 대해서는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
2.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(포장 및 보관 등 부대 서비스를 포함한다) 운송
3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5항제1호의 폐기물 수집·운반업자에 의한 폐기물 운송

### □ 관련 규정 : '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' 제2조제7항

- 운송주선사업자(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)가 의뢰 받은 화물을 1대 사업자 또는 위·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
  - 다른 운송사업과 겸업하지 않거나, 1대운송사업과 겸업하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선한 실적 중 1대사업자 또는 위·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만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

**참고2 행정처분 및 과징금**

위반행위	근거규정	행정처분 내용	
		사업정지 등	과징금(만원)
직접운송의무 위반 (법 제11조의2)	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2	1차 : 사업전부정지(30일) 2차 : 사업전부정지(60일) 3차 : 허가취소	일반 : 500
최소운송기준 위반 (법 제47조의2제2항)	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3	상동	일반 : 500 용달 : 250
실적신고의무 위반 (법 제47조의2제1항)	법 제19조제1항 제12호의2 법 제21조제1항	1차 : 사업일부정지(10일) 2차 : 사업일부정지(20일) 3차 : 사업일부정지(30일)	일반 : 300 용달 : 150
	법 제27조제1항 제8호의2 시행령 제7조제2항	1차 : 사업정지(10일) 2차 : 사업정지(20일) 3차 : 사업정지(30일)	주선 : 300
	법 제32조제1항 제13호의2 시행령 제7조제2항	1차 : 사업일부정지(10일) 2차 : 사업일부정지(20일) 3차 : 사업일부정지(30일)	가맹 : 300

\* 위반행위가 2차 이상인 경우 과징금 : 2차 이상 위반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기간 / 1차 위반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기간

\*\* 허가취소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